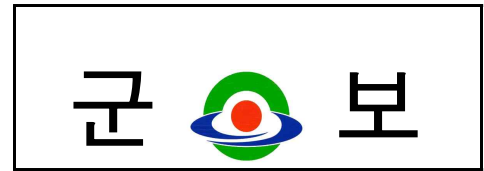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3호 2023. 2. 9.(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공인 신조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3-260호)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26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공고 제 2023- 260호

공인 신조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사유 : 예천읍 통합인증발급기 구입에 따른 신조
2. 신조 개시일 : 2023년 2월 7일
3. 신조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2023년 2월 7일

예 천 군 수

신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민원실 예천의 장전 읍인용	훈민정음체 2.1cm×2.1cm		통합 인증기 (1)
신조	민원실 예천의 장전 읍인용	훈민정음체 2.1cm×2.1cm		통합 인증기 (2)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정비(안 제1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신설 (안 제2조)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조문 내용 추가(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2ljh120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1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3항 따라 군수”를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따라 예천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 ----- ----- ----- ----- -----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1. · 2. (생략) 3. ~ 6. (생략)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 -----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 2의2.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 ----- -----

예천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5조제3항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둘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심의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제>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
----- 군수-----

-----.

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